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91 발의연월일: 2020. 12. 15.

발 의 자:서동용・유정주・양정숙

홍정민 · 남인순 · 이광재

이동주 • 권인숙 • 고영인

김철민 · 송영길 · 인재근

김승남 · 주철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. 그런데 기존의 평생교육체계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·고령화,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,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등 급변하는 산업·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.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평생학습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의 정비,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신장,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,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에 따른 온 라인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,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,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확충 등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지난해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평가하도 록 함(안 제11조).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고,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신설).
- 다.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8조의2 신설).
- 라. 시·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·운영하고, 시장·군수·자 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및 읍·면·동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 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(안 제20조, 제21조 및 제21조의 3).

- 마.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평생교육기관 등에 채용 또는 배치된 평생교육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함(안 제26조).
- 바.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의2 신설).
- 사.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(안 제34조의2 신설).
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문자해득교육"을 "문해교육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"문자해득교육"(이하 "문해교육"이라 한다)이란"을 ""문해교육"이란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"평생교육이용권"이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된 증표를 말한다.
-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 -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2.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-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"시·도지사는"을 "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

- ·도지사는"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시·도교육감과"를 "시·도지사는 시·도교육감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- ④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중 "지정 및"을 각각 "지정, 평가 및"으로 한다. 제16조제1항제3호 중 "개발"을 "개발(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
-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16조의2(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

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 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 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효율적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수 있다.
-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(이하 "이용권자"라 한다)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 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,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.
 -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.

-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권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, 회수,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탁한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·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 등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 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

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내용, 평생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제4항제3호 중 "개발"을 "개발(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지원"을 "지원 및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를 제12호로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0.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
- 11.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

제20조제1항 중 "운영할 수 있다"를 "운영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2호) 중 "상담"을 "상담 및 컨설팅 지원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3호) 및 제7호(종전의 제3호의 2) 중 "운영"을 각각 "운영 및 지원"으로 한다.

- 2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·연구
- 3. 해당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학습경험·이력의 관리 및 지원
- 4.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

제2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의3(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 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 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 중 "시·도교육감은"을 "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"을 "시·도 교육감은"으로 한다.

제21조의3제1항 중 "운영할 수 있다"를 "운영하여야 한다"로 한다.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4(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

임(이하 "자발적 학습모임"이라 한다)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제2호"를 "제4항제2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에"를 "제5항에"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과정과 연관된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을 인정할수 있다.

제26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정한다"를 "정하고, 제4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, 방법 및 내용과 제6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"로 한다.

- 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용 또는 배치된 평생교육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(補修敎育)을 받아야 한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거나 배치한 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

서는 아니 된다.

-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26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6조의2(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,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의2(평생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)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 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·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 할 수 있다.
 - ⑤ 그 밖에 평가 또는 인증의 시행, 전문기관에의 위탁,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제7항 중 "제2항에 따른"을 "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"로, "지정을"을 "지정 또는 인가를"로, "관할 교육감의"를 "관할청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"제53조의2제9항을"을 "제53조의2제10항을"로, "준용한다"를 "준용하며, 보건·위생·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, 제9조,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"로한다.

제32조제1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(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)의 경영자는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"으로, "운영할"을 "운영하거나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사업장에"를 "사업장 또는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사업장에서"를 "사업장 또는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서"로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사업장과"를 각각 "사업장 또는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사업장에서"로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사업장과"를 각각 "사업장 또는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사업장과"로하고, 같은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같은 조 제5항 중 "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"를 "재학생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"로한다.
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(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)의 경영자
-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

기업의 연합체(이하 "산업단지 기업연합체"라 한다). 다만,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의 규모가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.

- 3. 「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협의체(이하 "산업별 협의체"라 한다)
- 4.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 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 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업원
- 5.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체의 종 업원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4조의2(평생교육시설의 공시대상정보 등) ① 제31조제2항에 따라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된 정보(이하 "공시정보"라 한다)를 시·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
 - 2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 - 3. 학년・학급당 학생 수 및 전・출입,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
 - 4. 교지(校地),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
 - 5. 직위·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
 - 6. 예 · 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

- 7. 급식에 관한 사항
- 8. 보건관리 · 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9.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
- 10. 제42조, 제42조의2,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, 지도·감독, 벌칙,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
- ② 제31조제4항, 제32조,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장관의 인가를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
- 2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3.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
- 4. 충원율,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
- 5.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
- 6.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
- 7.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
- 8. 예 · 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
- 9.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
- 10. 제42조, 제42조의2,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, 지도

- 감독, 벌칙,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
- 11.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
- 12. 교원의 연구·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
- 13.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
- 14.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·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평생교육시설의 명칭
- 2.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표 전화번호
- 3. 교육과정
- 4. 교육과정별 정원
- 5.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
- 6. 학습비
- 7. 평생교육시설 설립 · 운영자 명단, 강사 명단
- ④ 교육부장관 또는 시·도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 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교육부장관 또는 시·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

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-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필요 한 양식을 마련·보급하고,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.
-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⑧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, 공시횟수,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의2제1항 중 "제31조부터"를 "제20조의2, 제31조부터"로 한다. 제39조제1항 중 "문자해득능력"을 "문해능력"으로 한다.

제4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 - 1.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2.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당자,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제30조제1항에 따라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의 현황 관리

제45조의3 중 "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
- 2.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
- 3.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

제4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

에"로 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
- 2.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"평생교육"이란 학교의 정규	1
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	
교육, 성인 <u>문자해득교육</u> , 직	문해교육
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	
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	
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	
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	
다.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"문자해득교육"(이하 "문해</u>	3. <u>"문해교육"이란</u>
교육"이라 한다)이란 일상생	
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	
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포함한	
사회적 · 문화적으로 요청되는	
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	
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	<u>.</u>
로그램을 말한다.	
<u><신 설></u>	4. "평생교육이용권"이란 평생
	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
	운 사람이 평생교육프로그램
	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평생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.

- 제10조(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 치) ① (생략)
 - ②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(생략)

<신 설>

2. ~ 4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11조(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 계획의 수립·시행) 시·도지 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ㆍ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기재(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 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) 된 증표를 말한다.

- 법은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 - ②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 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| 제10조(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 치) ① (현행과 같음)

 - 1. (현행과 같음)
 - 2. 제1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 적 평가에 관한 사항
 - 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 호까지와 같음)
 -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 제11조(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 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15조(평생학습도시) ① 국가는 제15조(평생학습도시) ① ------지역사회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·군 및 자치구를 대 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다.

- ②・③ (생 략)
- ④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④ ---

·도지사는 시·도교육감과	
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 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하고, 교육부장관은 진흥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-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.
- ④ 시행계획의 수립・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<u>평가 및-----</u>.
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- 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 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- 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 - 1. 2. (생 략)
 - 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
<신 설>

4. (생략) ② (생략) <신 설>

	<u>지정, 평가</u>	<u>및</u>
제	16조(경비보조	및 지원) ①
	1 • 2 (혀행과	같음)

- 3. ----개발(온 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 램의 개발을 포함한다)
- 4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및 「고 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학교 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16조의2(평생교육이용권의 발 급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 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 람의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 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 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

및 수급 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의 작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예외로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 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 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

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 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-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(이하"이용권자"라 한다)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,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.
 -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 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.
 -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권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을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 - 5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, 회수,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· ②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- 제18조(평생교육 통계조사 등) ① 제18조(평생교육 통계조사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 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 무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탁한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제18조의2(평생교육 종합정보시 스템의 구축・운영) ①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<u>체계적 · 효율적으로</u> 관리하고 관계 기관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종 합정보시스템을 구축・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종 합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 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

제19조(국가평생교육진흥원) ① 제19조(국가평생교육진흥원) ① ~ ③ (생 략)

-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한다.
- 1. 2. (생략)
- 3.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 워
- 4. 5. (생략)
- 6. 제20조에 따른 시·도평생교 육진흥원에 대한 지원

7. ~ 9의3. (생략) <신 설>

<신 설>

10. (생략) ⑤ ~ ⑧ (생 략) 제20조(시 · 도평생교육진흥원의 | 제20조(시 · 도평생교육진흥원의

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 보의 범위와 내용, 평생교육 종 합정보시스템의 구축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~ ③ (현행과 같음)

 - 1. 2. (현행과 같음)
 - 3. ----개발(온라 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의 개발을 포함한다)-----
 - 4. 5. (현행과 같음)

----지원 및 시•

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

- 7. ~ 9의3. (현행과 같음)
- 10.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사항
- 11.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에 관 한 사항
- 12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- ⑤ ~ ⑧ (현행과 같음)

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 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u><신</u> 설> 2. 평생교육 상담

3.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

3의2.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 로그램 <u>운영</u>

<u>4. · 5.</u> (생 략)

제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저 등의 설치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운영) ①
<u>운영하여야 한다</u> .
②
1. (현행과 같음)
2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
을 위한 조사·연구
3. 해당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
에 관한 학습경험ㆍ이력의 관
리 및 지원
4.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
<u>5.</u> <u>상담 및 컨설팅 지</u>
<u>원</u>
<u>6.</u> <u>운영 및</u>
지원
<u>7.</u>
<u>운영 및 지원</u>
<u>8.•9.</u>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
같음)
세20조의2(장애인평생교육시설
등의 설치) ①・② (현행과 같
으)
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
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

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

③ (생략) <신 설>

제21조(시・군・구평생학습관 등 제21조(시・군・구평생학습관 등 의 설치・운영 등) ① 시・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 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

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 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20조의3(노인평생교육시설 설 치 등)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 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 정 · 운영할 수 있다.

-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 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 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.

의 설치・운영 등) ① 시장・ 군수・자치구의 구청장은-----

- 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 다.
- 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④ (생 략)
- 제21조의3(읍·면·동 평생학습 센터의 운영) ① 시장·군수· 자치구의 구청장은 읍·면·동 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 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 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<u>운영할</u> 수 있다.
 - ② (생략)

<u><신 설></u>

 ② 시·도 교육감은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의3(읍·면·동 평생학습 센터의 운영) ①
센디의 군정) ①
<u>운영하여야</u>
<u>한다</u> .
② (현행과 같음)
제21조의4(자발적 학습모임의 지
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
체는 지역사회 주민이 평생학
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
로 참여하는 모임(이하 "자발
적 학습모임"이라 한다)의 활
동을 지원할 수 있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 학

제23조(학습계좌) ① • ② (생 략)

<신 설>

- ③ (생략)
-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 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
-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 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제2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 제26조(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

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 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, 자발 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 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- 제23조(학습계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과정과 연관된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 격을 인정할 수 있다.
 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 - ⑤ -----제4항제2호--
 - (6) -----제5항에-----

용)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용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평생교육사에게 교육을 받 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채용 또는 배치된 평생교육 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(補 修敎育)을 받아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채용하거나 배치한 자는 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있다.

<u>⑦</u> -----

-----정하고, 제4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, 방법 및 내용과 제6 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의2(실태조사) ① 교육부장

<신 설>

관은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,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 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8조의2(평생교육기관의 평가 인증 등) ① 교육부장관은 평 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 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.
 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·관리 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의 운영·관리 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에 드 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.
 -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 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 7 ① ~ ⑥ (생 략)

-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- 8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,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사항은 각각 「사립학교법」제28조, 제29조 및 제53조의2제 9항을 준용하고, 장학지도 및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각각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.다만,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・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

시행, 전문기관에의 위탁, 평가
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
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
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① <u>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</u>
기정
또는 인가를
<u>관할</u>
<u>청의</u>
8
제53조의2제

<u> 10항을</u>
<u>준용하며,</u>
보건・위생・학습환경 등에 관
한 사항은 각각 「학교보건법」
제4조, 제9조, 제9조의2 및 제12

⑤ 그 밖에 평가 또는 인증의

하여야 한다.

제32조(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 시설) ①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규모 이상의 사업장(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) 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 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·운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	조를 준용한다
제	32조(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
	시설) ① <u>다음 각 호의 어느</u>
	하나에 해당하는 자는
	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
	<u>탁하여 운영할</u>
	1 15224 2 221 25
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(공동으로 참여 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)의 경영자
- 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연합체(이하 "산업단지 기업연합체"라 한다. 다만, 산업단지 기업연합 체에 속한 사업장의 규모가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.
- 3. 「산업발전법」 제12조제2항

-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- 해당 <u>사업장에</u> 고용된 종업
 원
- 2. 해당 <u>사업장에서</u>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
- 3. 해당 <u>사업장과</u>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·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<u>사</u>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

<신 설>

에 따라 구성된 산업부문별
인적자원개발협의체(이하 "산
업별 협의체"라 한다)
②
1 <u>사업장 또는 산업단지</u>
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-
2 <u>사업장 또는 산업단지</u>
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에
사
_
3 <u>사업장 또는 산업단지</u>
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-
<u>사업장 또는 산업단지</u>
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-
4. 해당 사업장 또는 산업단지
기업연합체에 속한 사업장과
동종 업종 또는 관련 분야에
소치느 어레이 조어의

<신 설>

- ③ ④ (생 략)
-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5. 산업별 협의체의 해당 업종또는 관련 분야에 속하는 업 체의 종업원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-----

------<u>재학생 처리방</u> 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----

제34조의2(평생교육시설의 공시 대상정보 등) ① 제31조제2항 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 된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 설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 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 된 정보(이하 "공시정보"라 한 다)를 시·도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
- 1.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
- 2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3. 학년 · 학급당 학생 수 및 전

- ·출입, 학업중단 등 학생변 동 상황
- 4. 교지(校地), 학교 건물 등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
- 5. 직위·자격별 교원현황에 관 한 사항
- 6. 예·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 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
- 7. 급식에 관한 사항
- 8. 보건관리·환경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
- 9.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
- 10. 제42조, 제42조의2, 제45조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, 지도·감독, 벌칙, 과태료등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
- ② 제31조제4항, 제32조, 제33 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 위가 인정되는 시설로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 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·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

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 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평생교 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 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
- 2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
- 3.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
- 4. 충원율,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
- 5.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
- 6.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
- 7.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
- 8. 예 · 결산 내역 등 평생교육 시설의 회계에 관한 사항
- 9.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 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
- 10. 제42조, 제42조의2, 제45조 의2 및 제46조에 따른 행정처 분, 지도·감독, 벌칙,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
- 11. 평생교육시설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

- 12. 교원의 연구·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
- 13.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
- 14.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운영

 상태 등에 관한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 외의 평생교육시설 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·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한다. 이 경우 그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시·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- 1. 평생교육시설의 명칭
- 2. 평생교육시설의 주소 및 대 표 전화번호
- 3. 교육과정
- 4. 교육과정별 정원
- 5.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총 교육시간
- <u>6. 학습비</u>
- 7. 평생교육시설 설립·운영자 명단, 강사 명단
- ④ 교육부장관 또는 시·도교

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해당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⑤ 교육부장관 또는 시·도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- ⑥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에 필 요한 양식을 마련·보급하고,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 야 한다.
-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의 공시 정보를 수집·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 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.
- 8 그 밖에 공시정보의 구체적 인 범위, 공시횟수, 그 시기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에 필요한

제38조의2(평생교육시설의 변경 인가・변경등록 등) ① 제31조 부터 제33조까지,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 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 록・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・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・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 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<u>문자해</u> 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・③ (생 략)

제42조(행정처분)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 쇄할 수 있고, 1년 이내의 기간
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38조의2(평생교육시설의 변경
인가·변경등록 등) ① <u>제20조</u>
의2, 제31조부터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-
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-

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 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4. (생 략) <신 설>

5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2조의2(지도·감독) ①·② | 제42조의2(지도·감독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•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제34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 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(현행과 같음)
-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 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 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 계인에 대하여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1.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2.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

<신 설>

제44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제44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① (생 략)

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② ------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 <신 설>

<u>1.·2.</u> (생 략)

<신 설>

③ (생략)

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

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, 조사범위, 조사담 당자,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.

(현행과 같음)

- 1.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
- 2.·3.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
- 4. 제30조제1항에 따라 「고등 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의 장이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의 현황 관리
- ③ (현행과 같음)

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|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46조(과태료) ① (생 략) <신 설>

- 제45조의3(벌칙) 제24조제5항을 제45조의3(벌칙) <u>다음 각 호의 어</u>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----
 -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 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 받게 한 자
 - 2.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<u>평생교육이용권을</u> 판매·대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한 자
 - 3.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 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
 - 제4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 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
 - 2.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 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

2	제1항에	따른	과태료	는 대
통리	청령으로	정하는	는 바에	따라
관형	할청이 부	과・징	수한다.	

<u>을 한 자</u>
③ 제1항 및 제2항에
,